

○委員長 金寅東 說明 다 끝났습니까?
 ○事務局長 申星浩 네.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委員長이 한번 質問 하겠는데 700萬원 관계는 우리가 內務部指針 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編成指針에서 빠지고 統計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事務局長 申星浩 編成指針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 豫算에 計上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金寅東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겠습니까.
 ○專門委員 梁在大 안녕하십니까? 專門委員입니다. 1992年度 一般會計 議會事務局所管 歲

出豫算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報告)

1. 豫算案 規模

'92年度 議會事務局所管 歲出豫算인 議會運營費의 規模는 총 57億 3,500萬원으로 '91年度 當初豫算額 34億 7,100萬원보다 65.2%인 22億 6,400萬원 第1回 追加更正豫算을 포함한 最終豫算 44億 5,000萬원보다 28.9%인 12億 8,500萬원 增額된 것입니다.

이 豫算額은 92年度 서울特別市의 一般會計 전체 豫算의 약 0.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92年度 事務局所管 豫算案 規模

單位：百萬元

官名	'92豫算案	'91 豫算		'91 對 比 增 加			
		當 初	最 終	當 初	%	最 終	%
議會運營費	5,735	3,471	4,450	2,264	65.2	1,285	28.9

2. 性質別 分類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2年度 事務局所管 豫算(案) 性質別 內譯

區 分	'92 豫 算(案)		'91(最終)豫算		'91 對 比	
	豫算額	構成比	豫算額	構成比	增 減	%
計	5,735	100	4,450	100	1,285	28.9
1.人 件 費	1,757	30.6	730	16.4	1,027	140.6
2.官署運營費	782	13.7	340	7.6	442	130.0
3.基本經常費	1,861	32.4	1,935	43.5	△74	△3.8
4.經常事業費	1,039	18.1	738	16.6	301	40.8
5.投資事業費	296	5.2	707	15.9	△411	△58.1
6.其 他						

이를 토대로 그 특성을 말씀드리면 30.6% 차지하고 있는 113명에 이르는 事務局 職員의 給與, 賞與金, 手當 등 人件費와 32.4%인 議員會議費, 議政活動弘報費, 補償金, 資產取得費 등 基本 經常費가 대종을 이루고 있

습니다.

한편, 人件費의 경우 '91年度와 대비 무려 140% 增額되었는데 이는 公務員 處遇改選費가 9% 반영되었고 '91年度 豫算에는 事務局 職員 人件費가 6個月分만 編成되었기 때문이

고 130%나 증가된 物品購入費, 官署當經費 등 官署運營費의 경우도 '91年은 6月分만 編成 되었으나 92年度는 12個月分을 計上하였기 때문이며 투자사업비는 議事堂 施設 補修費 減少에 따라 오히려 58.1%나 감소되었습니다.

3. 豫算案의 細部內譯

內年度 豫算案의 세부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檢討意見

다음은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事務局所管 豫算인 議會運營費 中 不用額 또는 事故移越 처리될 豫算이 상당수 있어 이는 豫算編成의 사전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不用額이 발생된 사유는 計上된 豫算을 그대로 執行한후 떨어진 執行殘額이 있는 경우와 計上된대로 執行이 불가능하거나 변경된 경우 및 豫算編成은 되었으나 豫算編成基準 및 지침에 위배되어 豫算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볼수 있는데 그 형태는 수당, 회의참석여비, 특별관공비, 의원 체육대회, 지방도시 의정자료수집 활동 여비 등 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그 사유에 해당되는데 내년부터는 의정 활동의 활성화란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思料됩니다.

둘째, 市議會廳舍 擴充의 시급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現 市議會廳舍는 사무국 직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위원회별 사무실의 협소 등 수용시설 부족으로 당초 시소유인 美文化院 建物 또는 국체청소유인 현 소공세무서를 시의회 건물로 활용토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급성을 요한 事案이어서 이번 豫算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방침 결정이 없는 관계로 豫算에 計上이 안되어 방침확정시 추후 追更豫算 編成 또는 豫備費 사용 소지가 발생함에 따라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事務局 職員의 협소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 시

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議政活動에 대한 對國民 弘報強化 方案에 관한 事項입니다. 현재 우리 議會의 대국민 홍보 수준은 의회공보 또는 회보발간, 議會運營 실무지침서 발간 등의 수준에 그쳐 아주 미세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議會構成의 일원함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地方自治制 實施에 따라 시민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시민들로부터 좀더 친근한 議會, 民主主義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등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홍보에 관심과 豫算上의 조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의회소개와 위원회 활동 소개를 위한 영화제작 등 홍보물 발간비와 의정활동 홍보비 등이 반영되긴 하였으나 홍보활동의 적극화와 전문화란 관점에서 홍보담당관 제도의 신설도 고려해 볼직하고 향후 의회가 어떠한 활동사항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감한 예산적 지원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委員會 運營과 관련된 事項입니다. 委員會 중심의 議政活動에는 議案을 사전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의안관련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등을 통해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專門委員의 책임과 임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豫算編成의 경우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직무수행 활동비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 소요되는 기관운영 관공비는 물론 의회 운영 자료수집 활동여비와 부서별 운영비등 專門委員이 機關이 아니라는 이유(사실 보좌기관임에도 불구하고)로 직무를 원활히 수행해야 할 계경비는 물론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산하에 적절한 인원의 배정 등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더 나아가서는 해

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및 자치선진국의 각종 입법 자료 번역 또는 발간활동을 위한 연구활동비와 정기적인 의회 운영기법 연수회 등의 방안도 연구검토해 볼만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현재 의사당 주차장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차가능대수가 30여대로 협소하여 회기중 주차난을 야기, 교통지장 초래는 물론 효율적인 의정활동 저해요인 인바, 적절한 주차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당 후면 주차장 240여평에 6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2단 철골조주차시설 설치공사가 시급하므로 기계상된 주차방송설비공사와 건물 담장설치 공사를 병행토록 하기 위해 3억여 원의 追加 豫算 計上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의회운영 자료수집 업무추진 및 감사 활동비 지원을 위해 포괄적으로 計上된 급여적 성격의 2억원의 情報費는 서울 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 調査事務補助費用支給 規程 (의회예규 제6호)에 의거 월초에 사무국 직원에게 定額으로 지급하고 있는바,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성 및 직책에 따르는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지급범위와 지급액을 결정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바, 포괄적으로 計上된 情報費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시행등에 대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일곱째, 의회가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역

할 수행을 위해서는 각종 자료의 정리, 보관은 물론 연구자료 수집 및 열람을 위한 공간등 도서관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참고 열람실, 서고 등 적절한 공간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고, 사서 전문가의 확보 및 도서관 장서구입비 등의 증액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덟째, 회의록 작성 용역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속, 정확한 회의록 발간, 배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기요원의 절대부족 및 용역활용이 미흡하였고 교정, 편집 요원이 최초 인력편성시 미고려되어 기록계 전직원이 대행하여 온 형편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교정, 편집 전문인력 5명이 계상되어 다행으로 생각되며 회의록 작성은 속기사 증원보다 용역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 효과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면에서 긍정적요인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아홉째,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2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시달된 의장용 차량비 1대의 신규취득분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의정활동의 원활화를 위한 월별 700만원의 특별 활동비가 추가 계상되어야 할 것이고, 승인된 31명의 사무국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분이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형태로 편성 증액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2 豫算 現況

(單位：千圓)

豫算科目	豫算額	備考
市議會運營	5,734,766	
議政活動	1,274,360	○ 議員經費
手當	660,000	• 會議參席 手當
國內旅費	63,360	• 會議參席 旅費
國外旅費	155,000	• 議會制度 比較觀察
特別辦公費	264,000	• 議會運營 會議費
補償金	132,000	• 其他 附帶經費

豫算科目	豫算額	備考	
議會運營	4,460,406	○ 行政支援 經費	
給與	670,664	・ 職員 俸給	
賞與金	324,155	・ 期末 手當	
其他職報酬	51,203	・ 專門職 公務員 俸給	
手當	62,139	・ 特勤手當, 時間外勤務手當, 講師手當	
定額手當	424,760	・ 家族手當, 長期勤續手當, 學費補助手當	
常用被服費	1,436	・ 案内員, 速記士, 防護員 勤務服	
給糧費	848	・ 乙支演習 給糧費	
國內旅費	47,616	・ 議政資料 蒐集活動 및 地方都市 交流	
需用費手數料	771,508	・ 會議錄, 弘報冊子, 映畫, 事務用品費	
福利厚生費	286,169	・ 定額給食費, 家計補助金, 體力鍛鍊費	
材料費其他	47,250	・ 單純管理人夫賃	
情報費	399,000	・ 給與情報費(299), 國際交流(50), 請願業務 處理(50)	
機關運營費	21,380	・ 機關運營에 따른 費用	
特別辦公費	380,000	・ 給與的經費(280), 세미나經費(50), 外國人迎接經費(40), 體育大會(10)	
公共料金	68,374	・ 郵便料, 電氣, 上下水道, TV視聽料	
諸稅公課金	1,895	・ 自動車稅	
車輛費	5,322	・ 車輛維持費, 自家運轉 維持費	
裝備維持費	55,351	・ 議事堂 및 各種施設 維持費	
燃料費	38,201	・ 都市가스 및 보일러 維持費	
補償金	103,682	・ 年金 및 醫療保險 負擔金	
賠償金	12,000	・ 證人.鑑定人 등 實費辨償費	
資產取得費	90,219	・ 音響裝備, 事務室 運營用品 購入	
施設費	105,000	・ 담장, 駐車放送, 防音施設工事	
大修繕費	191,000	・ 暖房配管, 衛生設備, 通信케이블 增設	
物品購買費	108,560	・ 定數管理用品 購入費	
官署當經費	192,674	・ 宿直手當, 給糧費, 旅費, 電話料金 등	
議政活動 關聯 豫算 編成 基準			
區分	豫算額	根據	算出基礎
日費 (手當)	660,000千원 (1人1日5萬원)	○ 地方自治法 第32條 ○ 同法施行令 第15條 ○ 서울市議會補酬等에 關한條例第15條	○ 5萬원 × 132名 × 100日
旅費	會議參席旅費 63,360千원 (1人1日4,800원) [國內旅費]	○ 地方自治法 第32條 ○ 同法施行令 第15條 ○ 서울市議會補酬等에 關한條例 67條	○ 4,800원 × 132名 × 100日

區 分	豫 算 額	根 據	算 出 基 礎
旅 費	議政資料 蒐集活動 35,851千원 [國外旅費]	○地方自治法 第32條 ○同法施行令 第15條 ○서울市議會補酬等에 關한條例67條	○38,000 원 × 7 日 × 132 名 × 2 回 × 1/2
	議會制度視察 155,000千원 [國內旅費]	"	
會議費 (特辦費)	264,000千원	○'92內務部 豫算 編 成 基本 指針	○2萬원 × 132名 × 100日
議政活動附帶費 (特辦費)	132,000千원 (1人當 年間 1,000千원)	"	○1,000千원 × 132人

<p>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p> <p>○委員長 金寅東 事務局長의 提案說明과 專 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위원님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金炯奎委員 質疑하십시오.</p> <p>○金炯奎委員 民主黨의 金炯奎입니다. 지금 91年度 豫算執行에 있어서 檢討報告上에는 議 政活動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檢討 가 신년도에서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현재 91年度 豫算額 中에서 議 政活動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므로 인해서 不用 額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p> <p>○事務局長 申星浩 네, 議政活動費가 상당액 이 지금 不用額으로 나올 형편에 있습니다.</p> <p>○金炯奎委員 그러면 그간에 事務局長께서는 議政活動을 專門委員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p> <p>○事務局長 申星浩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되었 지만 年末까지 저희들이 推計를 해 보니까 전체 金額 中에서 55% 정도 집행되리라 이 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議會가 開院 한지 반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 55% 수 준의 집행은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p> <p>○金炯奎委員 事務局에서 議員의 議政活動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금년도 평가가</p>	<p>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議員들 자 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事務局에서 그마만큼 활성화를 하는데 좀더 신경을 덜 썼다는 이런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점 특별히 앞으로 議 政活動을 활성화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 주 시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p> <p>그리고 신년도 豫算에서 議會運營資料蒐集業 務推進 및 監査活動費 支援에 대한 급여성 성격의 2億원이라고 하는 情報費가 事務局職 員에게 定額으로 支給을 하고 있다 이런 지 적에 있었는데 검토보고에서... 과연 定額으로 支給하는 이 문제가 타당한 것인지 또 실지 로 定額으로 支給하고 있는 것인지 이 문제 에 대해서 좀 事務局長께서 말씀해 주세요.</p> <p>○事務局長 申星浩 이것은 우리 事務局職員 이라고 그래서 定額으로 支給한게 아니고요 전체 公務員이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 서 아마 名 局에서 豫算審議때도 이게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p> <p>○金炯奎委員 그리고 우리 專門委員들이 委員 會에 議政을 보좌한다 이런데서 관련해 가지 고 상당히 專門委員이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이런 관점이고 또 그간에 議 會運營에 대한 職制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事務局長께서 專門</p>
---	---